

“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”



# 근로복지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

1. 관련: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96호, 2021.12.30.)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·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·변경사항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에 착오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 전문 1부
  2.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·변경·삭제 내역 1부
  3.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 & A 1부. 끝.

## 근로복지공단이사장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 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



차장

김현주

요양부장

전결 12/30

윤주영

협조자

시행 요양부-6577

(2021.12.30.)

접수

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(교동)

/ www.kcomwel.or.kr

전화 0527047492

전송 0502-608-1200

/ yeoin@kcomwel.or.kr

/ 비공개(5)